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8. 20 선고 2014나6521 판결 [토지인도 및 건물철거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B

변 론 종결 2015. 7. 16.

판결 선고 2015. 8. 20.

제 1 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2가단54181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, 서울 서대문구 F 대2,531.9㎡를 인도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F 대 2,531.9㎡(이하,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중 531,699,000분의 91,593,222 지분을 가진 공유자이다.

나. 이 사건 토지 상에 존재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(이하 '이 사건 각 건물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1996. 7. 9. E 주식회사(구 D 주식회사)에서 피고와 C에게로 각 1/2지분 소유권이 이전되었다.

【인정사실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(가치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와 C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을 주장,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는, ①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, ②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에 지나지 않는 원고가 6채에 달하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,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.

그러므로 살피건대, 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 등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, 증여, 강제경매 등에 의하여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된때에 지상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소유를 위하여 그부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이라 할 것인데,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지분권을 취득할 당시 위 각 건물의 전 소유자인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 역시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,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로서 민법 제2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,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만한 어떠한 사정이 없으므로,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안 승 호, 판사 엄 철, 판사 황보승혁

목 록

1. 서울 서대문구 F 제디동호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점포 484.30㎡
 내 2호 19.50㎡
2. 서울 서대문구 F 제디동호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점포 484.30㎡
 내 3호 19.50㎡
3. 서울 서대문구 F 제디동호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점포 484.30㎡
 내 7호 17.52㎡
4. 서울 서대문구 F 제디동호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점포 484.30㎡
 내 8호 19.50㎡
5. 서울 서대문구 F 제디동호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점포 484.30㎡
 내 10호 19.50㎡
6. 서울 서대문구 F 제디동호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점포 484.30㎡
 내 11호 19.50㎡. 끝.

